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6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4
1. 총괄	4
2. 조문별 검토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6.
3.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수리 요건 규정은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우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은 범죄자 또는 그 공모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제소유자가 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관리기능을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

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FATF 권고사항15 주식서 3항,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상자산사업에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대주주가 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타 금융업권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

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형법」 등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

IV. 검토의견

1. 총괄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¹⁾은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0조의11³⁾은 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신고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 같은 조 제3항4)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 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를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이 때의 금융관련 법률은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⁵⁾ 및 위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률을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⁶⁾

□ 그런데,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의 금융범죄 전력에 대한 고려대상을 대표자와 임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
-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 <2022. 8. 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가 범죄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법률의 범위를 금융관련 법률로 한정하고 있어 금융범죄가 아닌 범죄의 전력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⁷⁾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⁸⁾

□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 적용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에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자도 신고 불수리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7)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대표이사과 사내이사 등이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상 표시하게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232조의2를 적용하여 사전자기등록위작죄를 적용하였고, 임의로 만든 계정을 통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죄와 「형법」상 사전자기등록위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바 있음.

8) 파이낸셜투데이, 2021.2.23., “‘형법 위반은 괜찮아’ 특금법 개정안 규제 공백 논란”,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67>, 2024.7.24.

[표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구 분		대표자	임원	대주주
벌금 이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관련법률	<u><현행법></u>		
	금융범죄 관련법률			
	경제범죄 관련법률	<u><개정안></u>		
금고 이상	기타 다른 법률			
사회적 신용				

- 다만,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와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입규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규정(제7조)은 2020년 3월 이 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 당시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대상을 특정할 수 없었음.
 - 이에 이 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자금세탁

방지의무 대상자를 특정한 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로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⁹⁾

- 그런데,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¹⁰⁾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목적의 진입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사항은 가급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법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에 관한 사항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2024년말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37개사) 중 대부분(33개사)의 갱신신고 신청기한이 도래하는 현실적인 입법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4.10.17. 기준)

구분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수리일
가상 자산 거래 업자 (27)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2021.10.06.
	코빗	주식회사 코빗	2021.10.20.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2021.11.25.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2021.12.02.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2021.12.01.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2021.11.29.

9)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288호) 검토보고”, 2019.8.

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수리일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2021.12.09.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2021.12.09.
	프로비트	오션스 주식회사	2021.12.09.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2021.12.21.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2021.12.21.
	코어다스	(주)코어다스	2021.12.17.
	플랫타익스체인지	주식회사 플랫타이엑스	2021.12.23.
	한빛코	주식회사 한빛코코리아	2021.12.23.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2021.12.23.
	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2021.12.23.
	오케이비트(OK-BIT)	주식회사 포리스다스코리아 리미티드	2021.12.30.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처스	2021.12.30.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2021.12.30.
	코인엔코인	(주)코엔코코리아	2021.12.30.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2021.12.30.
	캐서레스트	주식회사 뉴링크	2022.01.04.
	텐앤텐	(주)텐앤텐	2022.01.04.
	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2022.01.04.
	오아시스거래소	(주)가디언홀딩스	2022.02.10.
	큐비트	큐비트(주)	2022.02.10.
기타 지갑 보관 · 관리 업자 (10)	코인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2022.09.01.
	코다(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2021.12.17.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2021.12.17.
	오하이월렛	(주)헥슬란트	2021.12.30.
	마이키피월렛	(주)씨피랩스	2022.01.04.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2022.01.07.
	카르도	(주)카르도	2022.02.10.
	텔리오	(주)텔리오	2022.02.12.
	페이코인(Paycoin)	PayProtocol AG	2022.04.22.
	베이직리서치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2022.06.27.
	인피닛블록	(주)인피닛블록	2023.08.07.

주1 2024년내 갱신신고 신청 필요 사업자 음영 표시(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청 필요)

주2 기준일 현재 업비트('24.8.21.), 코빗('24.9.4.), 코인원('24.10.10.), 빗썸('24.10.17.), 플라이빗('24.10.16.), 지닥('24.10.14.) 등 6개 사업자가 갱신신고 신청을 하여 심사 중임.

(자료: 금융위원회)

2. 조문별 검토

- 개정안은 ① 대주주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정의하면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며,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의 범위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포함하는 한편,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현행	개정안
	<u>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u> <u>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u> 1) <u>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u> 2) <u>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제7조(신고) ①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u>

현행	개정안
2. (생략) ② (생략)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u>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u>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u> -- <u>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u> --- <u>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u>

현행	개정안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먼저, 개정안(제2조제7호 및 제7호제1항제1호의2 신설)은 대주주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정의하고 신고사항에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임.

○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¹¹⁾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사항으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¹²⁾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의 대주주 정의규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상의 대주주 신고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

11)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제7조제3항제3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사유로 기존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 외에 “대주주”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감안 하여 대주주의 범죄전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임.

○ 범죄전력이 있는 대주주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점, 국제자금세탁방지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도 범죄자 또는 그 공범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상당한 또는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소유자이거나, 경영권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¹³⁾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13) 「FATF 국제기준 15. 주석서 3항」

3. VASPs should be required to be licensed or registered. At a minimum, VASPs should be required to be licensed or registered in the jurisdiction(s) where they are created*. In cases where the VASP is a natural person, they should be required to be licensed or registered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ir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Jurisdictions may also require VASPs that offer products and/or services to customers in, or conduct operations from, their jurisdiction to be licensed or registered in this jurisdiction.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or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criminals or their associates from holding, or being the beneficial owner of, a significant or controlling interest, or holding a management function in, a VASP. Countries should take action to identify natural or legal persons that carry out VASP activities without the requisite license or registration, and apply appropriate sanctions.

* References to creating a legal person include incorporation of companies or any other mechanism that is used.

3. VASP는 인허가받거나 신고·등록 되어야 한다. 적어도 VASP가 설립된 관할권 내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되어야 한다*. VASP가 자연인인 경우, 영업소재지 관할권 내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되어야 한다. 각국은 당해 사법관할권 내에서 고객에 상품·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운영하는 VASP에게 해당 관할권 내에서 허가받거나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권한당국은 범죄자

심사 시 대주주 요건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령에서는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금융범죄 전력 요건을 규정¹⁴⁾하고 있으며, 등록제를 채택하는 온라인투자연계업자¹⁵⁾와 대형대부업자¹⁶⁾의 경우 대주주 관련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있음.

또는 공범이 VASP의 상당한 또는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소유자이거나, 경영권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각국은 허가나 등록 없이 VASP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에 관해 확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 법인 설립 관련 참고사항으로는 회사 또는 회사설립에 사용된 그 밖의 수단 등이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 것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3조의5(등록요건)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 것

□ 개정안(제7조제3항제3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을 확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외국의 관련 법률 포함)의 경우에는 벌금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법률 포함)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표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법률의 범위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벌금 이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관련법률	○ 특정금융정보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테러자금금지법 ○ <신 설>	○ 특정금융정보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테러자금금지법 ○ <u>마약거래방지법</u>	<u>외국의 관련법률 포함¹⁾</u>
	금융범죄 관련법률	○ 외국환거래법 ○ 자본시장법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 외국환거래법 ○ 자본시장법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경제범죄 관련법률	<신 설>	○ <u>공정거래법</u> ○ <u>조세범 처벌법</u> ○ <u>특정경제범죄법</u> ○ <u>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¹⁾</u>	
금고 이상		<신 설>	○ <u>기타 다른 법률</u>	<u>외국의 기타 다른법률 포함</u>

주1) 현행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금융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령상 금융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도 포함하고 있음.

- 불법재산 및 자금세탁행위에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른 불법수익 등과 범죄행위가 포함¹⁷⁾되어 있다는 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업무관련성이 가장 직접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여 범죄행위 예방 및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금융범죄 외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법률을 추가하려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의 유입을 방지하여 경제범죄 전력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유입을 방지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임.
-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죄전력은 근거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업자¹⁸⁾와 대형대부업자¹⁹⁾ 등록요건으로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1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등록요건)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마.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3조의5(등록요건)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점업금지업종 등)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한 유사 입법례가 있음.

-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①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허가 심사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 「특정경제범죄법」과 「마약거래방지법」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②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대주주 중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고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²⁰⁾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 변경·갱신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③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서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및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등 예외를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마약거래방지법」의 경우 불법재산 및 자금세탁행위에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른 불법수익 등과 범죄행위가 포함²¹⁾되어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장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금융관련법령에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금융관련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마지막으로, 개정안(제7조제3항제3호)은 관계 법률에 따른 범죄전력이 있는 자(벌금 이상의 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전력이 있는 자(금고 이상의 형)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범죄전력에 해당하지는 않는 채무 불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 이는 등록제를 채택하는 온라인투자연계업자²²⁾와 대형대부업자²³⁾

2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등록요건)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 <u>금융기관</u> ”이라 한다]인 경우	마.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

등의 입법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대표자·임원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심사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은 등록제보다 완화된 규제²⁴⁾에 해당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3조의5(등록요건)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2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면허제나 허가제를 등록제로, 허가제나 등록제를 신고제로, 신고제를 자유업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에 있었는데, 면허제·허가제·등록제·신고제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폭이 적어지는 순서로 본 것이다. 이는 영업 활동에 관한 규제를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분도 나름대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11